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도로점용료 징수 부과에 관한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별표 3 점용료 부과기준 적용(안 제3조)

나. 제3조의2 삭제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적용

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감면사항 추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8. 20 ~ 2015. 9. 9(의견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 기타 특별한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을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1을 감면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도로법 시행령」 제55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4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각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1을 감면한다.
<신 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 설>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